

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(이진숙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1744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10. 1.

발 의 자 : 이진숙·나경원·이종욱
김석기·김태규·유상범
박대출·엄태영·강명구
김기현·장동혁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5·18민주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이 등록을 신청한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이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그 해당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면서, 필요한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, 5·18민주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·결정된 사람의 명단을 공고하도록 하는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음.

이에 5·18민주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등록 여부를 결정할 때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치도록 하고, 국가보훈부장관이 5·18민주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명단을 매년 공고하도록 하는 한편,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유를 조정하려는 것임(안 제7조제3항, 제10조의2

및 제95조제4항).

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3항 중 “거칠 수 있다”를 “거쳐야 한다”로 한다.

제1장에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의2(명단 공고) 국가보훈부장관은 5·18민주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명단 및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매년 공고하여야 한다.

제95조제4항 중 “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에”를 “제1항제5호에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5·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등록 및 결정에 관한 적용례)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5·18민주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이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명단 공고에 관한 적용례)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

전에 5·18민주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결정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.

제4조(이 법 적용 대상 배제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5조제4항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 아니하고 제7조에 따라 5·18민주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된 사람은 제9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5·18민주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인 것으로 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7조(등록 및 결정) ① · ② (생략)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 전단에 따라 5·18민주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(이하 “보훈심사위원회”라 한다)의 심의·의결을 <u>거칠 수 있다</u> .	제7조(등록 및 결정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거쳐야 한다</u> .
④ (생략) <u><신설></u>	④ (현행과 같음) <u>제10조의2(명단 공고) 국가보훈부장관은 5·18민주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명단 및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매년 공고하여야 한다.</u>
제95조(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) ① ~ ③ (생략)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<u>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에</u> 해당하는 사	제95조(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 <u>제1항제5호에</u> -----

유로 5·18민주유공자를 이 법
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
제3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
상에서 제외된 사람을 이 법의
적용 대상자로 결정할 때에는
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·의결
을 거쳐야 한다.

⑤ (생략)